

공정위, 유통산업분야 규제개혁방안 및 항공운송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제시

경제규제개혁위원회(위원장: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)는 지난 1월 21일(수) 제9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유통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개혁방안 및 항공운송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였는데, 동 규제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유통산업분야 규제개혁방안

I. 유통업의 규제현황

진입규제

-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백화점·대형점 등 대규모점포에 대해 업태별로 매장면적·시설기준·직영비율 등을 규제(유통산업발전법)
 - 예 백화점(매장면적 4천㎡이상)은 직영비율 30% 이상, 대형점(매장면적 3천㎡이상)은 직영비율 100% 의무화
- 유통업의 입지나 건축가능면적 등에 대해서도 규제(건축법, 도시계획법 등)
 - 예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농수산물 공판장, 대형할인점,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만 설치 가능(건축법시행

령 제65조 별표14)

-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㎡이하인 판매시설만 설치 가능(건축법시행령 제65조 별표3)

영업활동에 대한 규제

-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등 영업활동에 대해 규제(유통산업발전법)
 - 예 영업시간, 셔틀버스운행 등에 대해 시·도지사가 변경명령 가능
- 업종별·유통단계별로 경쟁제한적 규제 다수
 - 예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,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규제, 화장품 병행수입규제 등



◇ 그동안의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의 결과, 유통업에 대해서는 입지·창업·세제·금융 등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다수

*예: 공장입지의 경우, 수도권 공업지역내에서는 3천㎡이내, 기타지역에서는 1천㎡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신·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나,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인정 없음.

*예: 제조업의 경우,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“농지전용 허가” 등 16개 인·허가사항이 의제처리되나, 유통업의 경우 대규모점포 등록시 “양곡매매업 신고” 등 3개사항만 의제처리됨.

◇ 그 결과, 유통분야의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

*한·일 백화점 수익성 및 생산성 지표 비교

구 분	한국('93)	일본('93)
-점당 평균매출액	1.07억 \$	5.16억 \$
-종업원 1인당 매출액	30만 \$	49만 \$
-1평당 매출액	3만 \$	6만 \$

II. 규제개혁의 기본방향

- 유통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지우는 각종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
- 유통업의 원활한 입지확보를 지원하고 유통업의 진입을 위한 번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
- 유통사업자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영업활동과정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

유통업태간 경쟁 도입 확대

- 유통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
- 수입자유화의 효과가 소비자 후생증대와 국내 경쟁촉진으로 연결되도록 병행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 개선

III. 세부과제별 개혁방안

◇ 규제혁과제 종괄: 4개분야 8개과제 ◇

구 분	과 제 명
1. 진입관련 규제	1-1. 대규모점포의 업태·시설 기준·직영비율 등에 대한 규제 폐지
	1-2. 대규모점포 개설에 수반되는 각종 영업의 허가·신고·등록절차 간소화
	1-3.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폐지
2. 토지이용 관련규제	2-1. 자연녹지 지역내 대형할인점 개설관련 규제 완화
	2-2. 일반주거지역내 설치가능한 판매시설 면적의 상향조정
3. 영업활동 관련규제	3-1.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규정 완화
	3-2. 상품권의 위탁판매 허용
4. 병행수입 관련규제	4-1. 화장품 병행수입관련 제도 개선

1. 진입관련 규제의 개혁

1-1. 대규모점포의 업태·시설기준·직영비율 등에 대한 규제 폐지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시장·대형점·백화점 등 5개로 구분하고, 업태별로 매장면적·시설·직영비율·매장분양을 규제(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)
 - 기준 부적합시 등록을 불허하고, 등록된 업체 이외에는 유사명칭 사용을 규제

업태	매장면적 기준	시설 기준	직영비율*	분양 제한
시장	3천㎡ 이상	-	-	분양시 시장 관리자 구성
대형점	3천㎡ 이상	· POS(매장면적 1천㎡ 당 5대이상)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시설 · 소비자피해보상센터	100%	분양 금지
백화점	4천㎡ 이상	· POS(매장면적 1천㎡ 당 3대이상)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시설 · 소비자피해보상센터 · 고객휴게시설	30% 이상	분양 금지
쇼핑센터	6천㎡ 이상	-	30% 이상	분양 금지
도매센터	3천㎡ 이상	· POS(매장면적 1천㎡ 당 3대이상)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시설 · 집배송시설(매장면적의 10/100이상)	10% 이상	분양 금지

* “직영비율”은 2000. 7. 1부터 적용(상기비율 미달사업자는 동 시점까지 제고 필요).

→ 경쟁상황·소비자기호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업태·직영비율·시설 등을 조정·선택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새로운 업태의 출현을 막고, 대형할인점 등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
→ 비현실적인 등록기준 설정으로 탈법행위를 유발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부담 가중

- * 현재 백화점업계의 직영비율은 약 10~20%인바, 이를 법상 기준인 30%로 높이기 위해서는 1만㎡ 매장 백화점의 경우 50~100억원의 부담 발생(업계의견)
- ※외국의 사례: 업태 구분 및 업태별 직영비율 등을 규제하는 사례는 없음(일본만이 업태를 “1종 대규모점포”와 “2종 대규모점포”로 구분)

나. 개선방안

-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매장면적기준·분양제한기준 폐지
 - 업태구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, 향후 중소기업관련법의 제정 검토 과정에서 추가 검토
- 직영비율과 시설기준 중 일부기준(POS, EDI, VAN)은 권고사항으로 전환
 - * POS(point of sales;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): 매장에서 판매와 동시에 품목, 가격, 수량 등을 전산입력하여 자료를 분석 활용하는 유통시스템
 - * EDI(electronic data interchange; 전자문서교환): 상품주문장부, 지불청구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컴퓨터를 이용해 교환하는 시스템
 - * VAN(value added network; 부가가치통신망):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추이 등 각종 유통정보를 전송, 교환하는 시스템

다. 기대효과

- 새로운 업태의 창출 유도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재정경제원 · 통상산업부와 합의

- 통상산업부 조치계획 : '98년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을 개정하여 '99. 1. 1 부터 시행

1-2. 대규모점포 개설에 수반되는 각종 영업의 허가 · 신고 · 등록절차 간소화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대규모점포내에서 각종 영업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록과는 별도로 해당 영업관련 개별법상의 허가 · 등록 · 신고절차 필요

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영업은 3개에 불과(음반 ·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,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, 양곡매매업의 신고)

* 대규모점포 개설시 필요한 영업허가 및 등록사항 : 상품권발행 인가, 일반 · 휴게음식점업 허가, 사회교육시설 설치 등록 등(전경련 주장 : 총 25개사항)

→ 대규모점포 개설시 영업 허가 · 등록 · 신고절차를 거치는 데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진입제한 요소로 작용

*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 204개 종류의 구비서류에 총 795일이 소요(전경련 주장)

나. 개선방안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록시

의제처리대상 확대

- 시 · 도에 「대규모점포 등록심의위원회(가칭)」를 설치,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한 경우, 개별법상 영업관련 허가 · 인가 · 등록 · 신고절차를 면제
 - * 관광숙박업 등록시 유사한 제도 운용중(「관광진흥법」제8조)
 - * 등록심의위원회는 부시장 ·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, 각 영업허가 · 등록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

〈개별법상의 허가 · 인가 · 등록 · 신고절차 면제대상 영업〉

- 식품제조 · 가공업, 축적판매제조 · 가공업
-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, 식품소분 · 판매업
- 집단급식소 설치 · 운영, 기타 遊技場業
- 상품권발행, 사회교육시설 설치
- 신고체육시설업,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

다. 기대효과

-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및 비용의 절감

* 상기 10개 사항의 등록 · 신고 의제처리시 행정 소요일수 약 70~80일(법정소요일수 기준) 단축 가능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통상산업부 · 재정경제원 · 보건복지부 · 교육부 · 문화체육부 · 건설교통부와 합의

- 통상산업부 조치계획 : '98년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을 개정하여 '99. 1. 1 부터 시행

1-3.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폐지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시장·군수가 제조담배의 소매인을 지정하고 있으며, 일반소매인 지정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규제(담배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)
 - 면소재지이상 지역:영업소간 거리 50미터 이상
 - 기타 지역:영업소간 거리 100미터이상
- ※ 외국의 사례
 - 미국·영국·독일 등:거리제한 및 소매인 지정제도 없음
 - 일본:50~300미터 거리제한, 소매인 지정제도 유지
 - 프랑스:15미터 거리제한, 소매인 지정제도 유지
- 거리제한으로 신규 소매인의 진입이 제한되고, 소비자의 불편 초래
- 특히, 유통업에 신규진출한 도·소매업자나 약국 등이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유통업자간 경쟁을 저해하고, 사업자의 사업 선택범위 제한

나. 개선방안

- 제1단계 :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인 거리제한기준 폐지
 - ※ '98년 상반기중 「담배사업법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'98. 7. 1부터 시행
- 제2단계 :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“신고제”로 전환
 - ※ 「담배사업법」을 개정하여 2000. 1. 1부터 시행
 - * 유사한 성격의 “주류판매업”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영업장, 식료잡화점, 일용잡화점 등에서 판매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판매 가능

다. 기대효과

- 도·소매업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통상산업부와는 합의, 재정경제원과는 미합의

관계부처 (재경원) 의견	검 토 의 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로서 유지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건강보호는 소매점의 거리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, 금연운동이나 금연 구역설정 등을 통해 해결 필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거리제한 유지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문제는 「청소년보호법」에 의해 대처 가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리제한 폐지 시 기존 영세소매상의 도산문제 발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롭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를 원하는 영세소매상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며, 경쟁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의 구조조정은 어느정도 불가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리제한 폐지로 담배소매점이 늘어날 경우 외국산 담배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,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의 어려움 가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산담배의 국내시장 잠식문제는 국산담배의 가격·품질경쟁력 향상, 국민의식 제고 등을 통해 대처할 사안임 • 거리제한하에서도 외산담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 고려시, 거리제한과 외산담배 점유율과는 관계가 낮음. (’93년 6.7%→’95년 12.5%→’96년 11.0%→’97년 11.2%) • 소매점 수의 증가는 국산담배의 판매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꼭 외국산담배에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움

2. 토지이용관련 규제의 개혁

2-1. 자연녹지 지역내 대형할인점 개설관련 규제 완화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자연녹지 지역내 대규모점포 개설시 토지형질 변경, 설치지역,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
(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<건교부령>,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·운영에관한고시<통산부고시>)

구 분	규 제 내 용
토지형질 변경면적	· 자연녹지지역내 토지형질변경은 1만㎡ 미만
설치지역	· 직선반경 1km안에 매장면적 30㎡ 이상의 점포 10개 이상인 경우 불허 - 다만, 도·소매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
시설 및 운영기준	· 창고형점포로 할 것,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출 것, 소비자 편의시설의 면적은 10/100 미만으로 할 것 · 개설자가 전체 매장을 직영할 것, 소비자 셀프서비스에 의할 것,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말 것 등

→ 토지형질변경 면적(1만㎡)은 적정한 매장 설계 및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적정면적에 미흡

- * 1만㎡의 부지로서는 건폐율(20%), 용적율(100%), 계단·화장실과 같은 공용면적 등 고려시 총당 매장면적이 약 990㎡(300여평) 규모에 불과

- * 기존 주요 할인점의 총당 면적: 프라이스클럽 서울 1,738㎡(상업지역), 까르프 일산점 1,596㎡(상업지역), 마크로 일산점 2,970㎡(준농림지역)

→ 인근 도·소매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규제완화조치의 실효성 상실

- *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 설치허용('96. 8) 이후 설치실적: 2개(수도권에는 없음)

→ 시설 및 운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자의 자율성 저해

나. 개선방안

- 자연녹지 지역내 대형할인점 개설시 토지형질 변경 가능면적을 상향조정(1만㎡ 미만 → 2만㎡ 미만)
- 설치지역 제한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, 시설 및 운영기준을 완화
 - 인근 도·소매업자 동의요건
 - 1단계('98. 7. 1시행): 1km내 점포 10개이상일 경우 동의 필요 → 20개 이상일 경우 동의 필요
 - 2단계('99. 7. 1시행): 동의요건 폐지
 - 창고형점포·셀프서비스 조건을 제외한 여타 시설 및 운영기준에 대한 규제는 폐지

※ '98년 상반기중 「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」 및 「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 설치·운영에관한고시」를 개정하여 '98. 7. 1부터 시행

다. 기대효과

- 대형할인점의 개설 촉진 및 유통사업자의 자율성 제고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통상산업부 · 재정경제원
과는 합의, 건설교통부와는 미합의

관계부처 (건교부) 의견	검 토 의 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연녹지 보전을 위해서 자연녹지내 토지형질변경면적 상향조정 불가 - 다른 목적으로가 지 파급되어 도 시계획의 근간 을 훼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연녹지는 개발에 대비해 유보하 고 있는 지역이고, 이미 정부방침으 로 대형할인점 개설을 허용하였으 므로 실제로 개설이 가능토록 상향 조정 필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적 상향조정시, 도로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교통문제 유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은 도시 외 쪽에 위치하여 교통문제 유발 가능 성이 크지 않으며, 도로 등 편의시 설은 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 지자체 와 사업자간에 협의하여 해결 가능 • 대형할인점 개설로 영세민의 생계 비 절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필요

2-2. 일반주거지역내 설치가능한 판매시설 면적의 상향조정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바닥면적이 1천㎡이하 인 판매시설(수퍼마켓 등)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(건축법시행령, 자치단체 건축조례)
- 1천㎡에는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(복도, 계 단, 주차장 등) 포함
- 매장이 너무 협소하여 식료품보관시설, 작업장 등 충분한 후방시설의 확보가 어렵고, 위생상 의 문제도 유발
- * 건축허용 한도인 1천㎡에서 공유면적 등을 제외할 경 우,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판매시설의 사실상의 매 장면적은 360㎡(120평) 수준에 불과

→ 일반주거지역 소재 수퍼마켓과 아파트단지 소 재 수퍼마켓간 형평성 결여

- * 아파트단지내의 수퍼마켓 등 판매시설은 「주택건설촉진 법」에 의한 “생활편의시설”로 분류되어 면적제한이 없음

나. 개선방안

-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매장면적을 현행 “1천㎡이하”에서 “2천㎡이하”로 상향조정
- * '98년 상반기중 「건축법시행령」 및 「자치단체 건축조 례」를 개정하여 '98. 7. 1부터 시행

다. 기대효과

- 일반주거지역내 중 · 소유통업자들의 매장협 소에 따른 애로 해소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
- 쇼핑공간 확대, 상품 선택범위의 다양화를 통 해 소비자후생 증대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재정경제원 · 통상산업부 와는 합의, 건설교통부와는 미합의

관계부처(건교부) 의견	검 토 의 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일반 주거지역내 판매시설의 면적 확대는 곤란 - 향후, 일반주거지역의 분 류를 세분화하는 등 주거지 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를 완화시켜 나갈 방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재도 “업무시설”(금융업소, 신문사, 오피스 텔 등)의 경우, 일반주거 지역에서 3천㎡까지 건 축을 허용하고 있음 • 매장규모 제한으로 대형 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업자의 편의성 제고, 아파트단지내 수퍼마켓 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면적 확대 필요

3. 영업활동관련 규제의 개혁

3-1.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규정 완화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법으로 광범위하게 규정(유통산업발전법)
 -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가능
-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들을 법적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일선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규제
 - 간접수단으로 이용될 소지

나. 개선방안

-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한 업무 규정을 완화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목적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기본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사항(상거래질서의 확립, 소비자보호, 유통정보화 추진)만을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고, 나머지 업무는 제외

다. 기대효과

-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자율성 및 규제의 투명성 제고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통상산업부와 합의

- 통상산업부 조치계획 : '98년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을 개정하여 '99. 1. 1부터 시행

3-2. 상품권의 위탁판매 허용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상품권 판매질서의 유지등을 목적으로 상품권의 타인 위탁 판매를 금지(상품권발행에 관한 규정<재경원고시>)
 - 다만, 가맹점의 판매와 중소기업 상품권의 금융기관 판매는 허용
-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발행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소비자의 불편 초래
- 중소기업은 허용하면서, 소비자 신용도·선도도가 높은 유통업체 발행 상품권의 위탁판매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불합리
- 고시로 상품권 위탁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위임의 한계 이탈 소지

나. 개선방안

- 공신력있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통한 상품권 위탁판매 허용

다. 기대효과

- 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 해소
- 상품권 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재정경제원과 합의

- 재정경제원 조치계획 : '98년 상반기중 「상품권발행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여 '98. 7. 1부터 시행

4. 병행수입관련 규제의 개혁

4-1. 화장품 병행수입관련 제도 개선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화장품 수입시, 외국제조업체의 관련책임자가 서명하여 공증한 제조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(약사법, 화장품제조업및제조(수입)품목허가등처리지침<보건복지부고시>)
- 제조업체의 제조증명서 없이는 화장품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행수입이 사실상 금지
- 화장품 수입이 사실상 독점화되어 가격경쟁이 제한되고, 수입품의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소비자후생 저해
- * 평균유통마진율 : 수입화장품 164%, 국산화장품 52%

나. 개선방안

- 병행수입자의 제조증명서 제출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
- 1단계('98. 7. 1. 시행) : 병행수입자 제품이 이미 독점수입업자에 의하여 수입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조증명서 제출의무 면제

- 수입자가 동일한 화장품의 수입여부의 확인 요청시 지방식품의약품청은 일정기간(예 : 15일)이내에 확인·회신토록 의무화
- ※ '98년 상반기중 「화장품제조업및제조(수입)품목허가등처리지침」개정
- 2단계(2000. 1. 1. 시행) : 허가 또는 검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 수입된 제품과 동일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병행수입 허가
- ※ 「화장품제조업및제조(수입)품목허가등처리지침」개정
- 3단계(2002. 1. 1. 시행) : 화장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제품의 경우 일반공산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 허용
- ※ 「약사법」개정

다. 기대효과 : 수입화장품의 가격인하 및 국산화장품의 품질제고 노력 유도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재정경제원·통상산업부와의 합의, 보건복지부와는 미합의

관계부처(보건복지부) 의견	검 토 의 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장품의 조성원료 및 그 분량 등이 기재된 제조증명서 없이는 품질확인 및 위해가능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조증명서 제출이 불가피 -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만으로는 구성성분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서 위해 여부 확인 곤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미 독점수입업자들에 의하여 수입된 품목에 대해 제조증명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병행수입 억제만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소지 - 필요시 독점수입자가 기 제출한 제조증명서를 활용하여 병행수입제품의 품질확인 및 위해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- 현재의 검사체제는 독점수입자가 위조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이를 색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, 위조품 반입에 대해서는 「상표법」 등에 의한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임 • 이미 수입된 품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서도 이해관계인의 요구시 공개되어야 할 행정정보임 • '97. 12. 3. 타결된 IMF협의사항에서도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“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”를 요구하고 있어, 병행수입절차의 개선 불가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병행수입허용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화장품업계의 심각한 타격 우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화장품의 국내시장 잠식문제는 국산화장품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대처할 사안 • 독점수입업자의 과도한 유통마진, 높은 소비자가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 활성화 필요

항공운송산업분야 규제개혁방안

I. 항공운송산업의 규제현황

- 항공운송산업은 크게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와 항공운송관련 보조서비스 분야로 구분(근거: 항공법)

- 항공운송서비스 분야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정기 또는 부정기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
- 항공운송관련 보조서비스 분야는 정비·급유 등 항공기취급업과 관련 부대서비스 제공 사업

◆ 항공운송산업의 분류 및 근거법령 ◆

구 분		사업의 종류(내용)	사업자수
항공운송서비스업		정기항공운송사업	2개
		부정기항공운송사업	9개
항공운송 관련보조 서비스업	항공기 사용사업	공중촬영, 화재진화, 농약살포 등	15개
	항공기 취급업	정비업, 급유업, 하역업, 지상조업	10개
	주선업 및 대리점업	복합운송주선업	841개
		상업서류송달업, 항공운송총대리점업	111개
터미널업	도심공항터미널업	1개	

* 복합운송주선업의 근거법은 화물유통촉진법

- 항공운송서비스 분야는 정기항공운송과 부정기 항공운송으로 구분하여 진입·영업활동 등에 대해 규제

-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진입은 공항시설 및 항공협정에 의한 제약 등을 고려하여 수급균형, 공익성 등의 기준에 의한 면허제로 운영

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활동 2

- 정기항공운송사업중 국내항공의 요금은 신고제이고, 국제항공의 요금은 인가제로 운영중
 -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진입은 고정익(일반 항공기)은 면허제, 회전익(헬기)은 등록제로 운영되고, 요금은 신고제
- * '98. 1월 현재 KAL과 아시아나를 제외할 경우 고정

익에 의한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는 없음(회전의 사업자는 KAL,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9개)

- 항공운송관련 보조서비스업의 경우 항공운송서비스업에 비하여 비교적 진입 및 요금규제가 많지 않음

◆ 업종별 진입 및 요금규제 ◆

구 분	정기 항공 운송		부정기 항공 운송		항공기 사용업	항공기 취급업	기 타 서비스업
	국내노선	국제노선	고정익	회전의익			
진 입	면허제	면허제	면허제	등록제	등록제	면허제	신고제
요 금	신고제	인가제	신고제	신고제	자유화	자유화	자유화
사업계획 변 경	인가제	인가제 (항공협정)	인가제	인가제	인가제	신고제	신고제

II. 규제개혁의 기본방향

- 항공운송산업 분야의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효율성 제고와 가격 및 서비스경쟁 유도
- 국내항공 요금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
- 기타 비행장관련 점검·검사제도의 개선

III. 세부과제별 개혁방안

1. 국내항공운송사업의 진입규제 완화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항공운송사업은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, 정기항공운송사업은 면허제, 부정기항공운송사업중 고정익은 면허제, 회전익은 등록제(항공법 제112조, 제132조)
 - 면허 또는 등록기준으로서 「공익상 필요하고 적절할 것, 공급과잉이 아닐 것, 경영상·항공보안상 적절할 것」 등을 규정
 -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 「경영 및 기술인력, 항공기대수, 예약 및 편의시설, 격납고」 등을 등록기준으로 추가

◆ 항공운송사업의 진입규제 및 사업자현황 ◆

구분	정기항공 운 송	부정기항공운송	
		고 정 의 (일반항공기)	회 전 의 (헬리콥터)
진입 규제	면허제	면허제	등록제
면허 또는 등록 기준	공익성, 수급균형, 경영·항공 보안상 적합성, 경영능력	경영 및 항공보안 상의 적합성, 시설 및 경영능력(자본 금 50억이상, 50인 승 이하 항공기 2 대이상, 조종사 및 정비사 등)	경영 및 항공보 안상의 적합성, 시설 및 경영능 력(자본금 20억 이상, 항공기 2 대이상, 조종사 및 정비사 등)
사 업 자	2개사 (대한항공, 아시아나)	9개사(대한항공, 아시아나, 삼성항공, 서울항공, 시티항공, 한국항공, 헬리 코리아, 현대우주항공, 흥익항공)	

* 부정기항공운송사업 : 정기항공운송사업외의 항공운송사업으로서, 지점간 운송사업, 관광비행사업, 전세운송사업 등 3개업종으로 세분화

→ 국내항공운송사업의 진입요건이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까다로와 이로 인해 사업자간 가격

· 서비스 경쟁이 미흡

•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 및 고정익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어 경쟁을 통한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저해

* 국내항공은 현재 기존의 2개항공사에 의한 대형항공기 및 주요 대도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항공서비스 제공 및 신규수요 확보에 한계

* 미국,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 COMMUTER항공기(50~60인승 이하)를 이용한 항공운송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

나. 개선방안

□ 국내항공운송사업의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

▶ 1단계 : 현행 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중 수급균형, 경영능력, 공익성 등의 면허기준을 삭제('99. 1. 1 부터 시행)

- 항공협정, 공항시설능력, 안전, 항공보안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면허 발급토록 개선
-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은 필요 최소한으로 완화

▶ 2단계 : 부정기항공운송중 고정익분야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(2001. 1. 1 부터 시행)

다. 기대효과

□ 국내항공운송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항공산업의 발전 도모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건설교통부, 재정경제원, 통상산업부와 합의

□ 건설교통부 조치계획 : '98년중 항공법을 개정하여 반영

2. 항공기취급업의 진입규제 완화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□ 항공기정비업, 급유업 등 항공기취급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

(항공법 제137조)

• 항공기취급업: 정비업, 급유업, 하역업, 지상조업(항공기 탑재관리 및 동력 지원, 항공기 청소 등)으로 구분(취급업체: 총10개)

• 면허기준으로서 수요·공급의 균형, 시설 및 경영능력을 규정(항공법 제138조, 동법시행규칙 별표34)

* 시설 및 경영능력 요건: 자본금 5억이상, 업종별 자격있는 정비사 5인이상, 업종별 필요장비 등

→ 자본금 및 인력 등 시설 및 경영능력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, 획일적이어서 세부업종별 특성 반영이 미흡

* 예: 4개 업종 모두 자본금(5억), 종사원(유자격자 5인) 기준이 동일

→ 항공기취급업분야에서 신규진입이 제한되고, 경쟁압력이 미흡하여 사업자간 가격경쟁 및 서비스 개선노력이 부족

* 특히, 향후 COMMUTER 운송사업의 활성화 등에 대비하여 진입요건의 완화 필요

나. 개선방안

□ 면허기준의 합리적 개선

• 자본금, 종사원 등의 면허(등록)기준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화하고,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('99년 1. 1부터 시행)

□ 항공기취급업을 단계적으로 등록제로 전환

▶ 1단계: 공항시설의 혼잡 및 안전문제와 관련이 적은 하역업 및 지상조업분야를 등록제로 전환('99. 1. 1부터 시행)

▶ 2단계: 정비업 및 급유업을 등록제로 전환(2001. 1. 1부터 시행)

• 수급균형 등 추상적·주관적인 요건은 폐지
* '98년부터 모든 취급업에 대해 100% 외국인 자본참여를 허용하기 때문에 면허제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음('97년까지는 49%만 허용)

다. 기대효과

□ 경쟁압력 제고 및 경쟁촉진에 따른 산업의 효율성 제고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: 건설교통부와 합의

□ 건설교통부 조치계획: '98년중 항공법을 개정하여 반영

3. 국내항공운송 운임 및 요금규제 완화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□ 국내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은 신고제(항공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33조)

• 운임신고시 건교부가 정한 운임산출기준에 따라 작성된 원가계산서를 첨부(항공법 시행령 제45조)

• 신고운임을 할인하는 경우 대상범위, 할인율, 적용기간, 사유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10일전까지 제출(항공법시행규칙 제285조)

• 운임신고는 관련사업자단체가 개별사업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(항공법시행규칙 제285조, 제301조)

→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으나, 사실상 인가제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가격결정의 자율성 및 탄력

적 운용을 저해

- 획일적 운임산정방식을 의무화하고, 운임할인의 경우에도 사전신고토록 하고있어 자율적이고 탄력적 운임적용 곤란

→사업자단체가 개별사업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격담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절차상의 지연을 초래

나. 개선방안

- 국내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항공사에 의한 사전예고제 및 건교부에의 사후신고제로 전환
- 건교부가 정한 기준에 의한 요금산출제도와 산출근거서류 및 예상사업수지계산서 등의 서류제출 의무화 폐지
- 운임할인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
- 관련 사업자단체가 운임신고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개별사업자의 직접 신고제로 운영

다. 기대효과

- 항공운임의 탄력적 적용 및 가격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이익 증대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건설교통부와 협의

- **건설교통부 조치계획** : '98년중 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'99. 1. 1부터 시행

4. 비공공용 비행장에 대한 각종 점검 및 검사제도 일원화

가. 규제현황 및 문제점

- 비공공용 비행장에 대하여 일반공항과 동일하게 각종 점검 및 검사제도를 운영(항공법 제 80조, 교통안전법 제16조)

→규모가 적고 이해관계인도 적은 비공공용 비행장에 대해 일반 공공용 비행장과 동일한 점검·검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비행장 관리·운영상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

* 비행장 현황 : 총 73개 비행장중 비공공용은 57개

나. 개선방안

- 비공공용 비행장에 대한 각종 점검·검사제도를 항공법에 의한 비행장 관리 검사(년 1회)로 일원화

* 교통안전법에 의거 실시되는 안전점검 및 운용점검은 폐지

다. 기대효과

- 비공공용 비행장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자부담 경감

라. 관계부처 협의내용 : 건설교통부와 협의

- **필요조치사항** : '98년 1/4분기중 교통안전관리대책 세부계획 지침 수립시 비공공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'98. 4월부터 시행